

의안번호	2219991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6.8.13.
추계번호	26D333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53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안 제5조의2)	36	12	36	36	12	132	26
조사대상 확대 (안 제30조제1항)	11,343	10,502	10,842	11,110	11,469	55,265	11,053
합계	11,379	10,514	10,878	11,146	11,481	55,397	11,0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1
1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각 선출·지명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둬.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30조제1항 (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로 포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
2	안 제30조제1항 (위원회의 조사대상)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현재 위원의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산정함
 - 개정안은 국회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10명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7명 인권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

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80명으로 가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1국 7개과를 신설하는데 70명, 인권상담 및 교육 관련 인력 증원 10명 등 총 80명의 인력을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인력의 직급별 구성은 고위공무원나급 1명, 3급 1명, 4급 8명, 5급 28명, 6급 29명, 7급 13명으로 가정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계획(안)

(단위: 명)

직급	부서											합계
	신설							증원				
	사회 권증 진국	사회 권조 사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인건비 단가는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 사업 관련 구체적 계획의 부재로 관련 사업비는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 11명, 임기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추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7명 인권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추계기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횟수를 산정한 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3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안전검토비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총 4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27~2031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수	3	1	3	3	1	11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위원 수	10	10	10	10	10	—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	3	3	3	3	3	—
회의참석수당 단가	0.4	0.4	0.4	0.4	0.4	—
추가재정소요	36	12	36	36	12	1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안 제30조 제1항)

-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사실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실시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증원인력 80명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단가(2026)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인건비 단가	148,796	141,681	120,667	95,983	73,937	59,58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¹⁾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임차료 제외) 비율(11.6%)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2027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7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6년 3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²⁾를 곱하여 산출함

[표 5]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7,068	7,280	7,498	7,723	7,955	37,525
기관부담금	928	960	996	1,033	1,072	4,990
기본경비	817	842	867	893	920	4,338
자산취득비	406	0	0	0	0	406
합계	9,219	9,082	9,361	9,650	9,947	47,2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임차료) 증원인력 80명을 위한 업무공간 임차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인당 면적 및 단위면적당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1인당 면적은 39㎡, 2026년 임차료단가는 보증금 253,020원/㎡ 임차료 및 관리비 509,840원/㎡임
 - 2027년 임차계약을 한 후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초 계약시기인 2027년에는 초기보증금과 월임차료를 합산하고, 그 후로 격년단위로 보증금과 월

1)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6. 3.)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관부담률(%)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2) 2027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78,000원임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하되, 인상률은 최근 5년간 한국부동산원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연평균상승률 1.4%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6] 증원인력에 대한 임차료: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임차료	2,124	1,420	1,480	1,460	1,522	8,006

주: 임차료에는 보증금과 월임차료, 관리비를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사실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증원인력 80명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52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등	9,219	9,082	9,361	9,650	9,947	47,259
임차료	2,124	1,420	1,480	1,460	1,522	8,006
합계	11,343	10,502	10,842	11,110	11,469	55,2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53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36	12	36	36	12	132
조사대상 확대	11,343	10,502	10,842	11,110	11,469	55,265
합계	11,379	10,514	10,878	11,146	11,481	55,3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80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